2022년도 제21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 1. 일 자 2022년 11월 10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창 용 의 장(총재)

조 윤 제 위 원

서 영 경 위 원

주 상 영 위 원

이 승 헌 위 원(부총재)

박 기 영 위 원

신 성 환 위 원

- 4. 결석위원 없 음
- 5. 참 여 자 강 승 준 감사 이 환 석 부총재보

배 준 석 부총재보 민 좌 홍 부총재보

이 상 형 부총재보 이 종 렬 부총재보

양 석 준 외자운용원장 김 웅 조사국장

홍 경 식통화정책국장김 인 구금융시장국장오 금 화국제국장박 양 수경제연구원장

김 용 식 공보관 한 승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최 문 성 의사팀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의안 제39호 -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28조 제15호에 의거 디지털화 등 금융거 래 환경 변화, 단기 예·적금에 대한 은행권과 소비자의 요구 증대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수신의 기타조건'을 개정하고 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위원들은 정기 예·적금 등의 최단만기를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별표> 수신의 기타조건'의 개정 또는 폐지 방안에 대한 관련 부서의 보고 이후, 규정을 폐지하기보다는 1개월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으며 그 근거로 비은행권(MMF)에서 은행권으로 의 예기치 못한 자금이동 가능성, 요구불예금 성격의 정기 예·적금 상품 출시 우려. 은행의 자금조달과 지급준비제도 운영에 대한 고려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음.

다만 일부 위원은 주요국 사례 등을 감안하면 추후 폐지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생략)